

교수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수 자녀,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여 학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20.8.12.개정)

제2조 (수강지도 및 사전안내) 교학처와 해당 전공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1. 교학처는 부모,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편람 및 종합학사시스템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2. 학생 소속 전공의 주임교수(대학원장) 및 지도교수는 부모,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지도하여야 한다.
3. 교학처는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 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4. 교학처와 소속 전공(대학원)은 선택 및 교양 교과목은 부모,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분반 구성 시 타 분반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 (강의수강 사전신고)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학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성적 평가 공정성 강화) ① 불가피하게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우선 검토하도록 하며, 교학처는 성적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목 시험채점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는 아래 사항에 대해 관련자료 검토 및 문답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출석 여부
2.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절한 점수의 부여 여부
3.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4. 시험 답안지 채점의 공정성 여부(타 학생 답안지와 비교 필요)
5. 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

제5조 (성적평가 관련 자료 보존) 성적평가 관련 자료의 보존은 학사관리규정 제74조에 따른다.

제6조 (위반시 제재조치) 자녀, 배우자, 4촌이내 인척이 본인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미 신고, 성적산출 근거 미 제출 등 위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총장은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수-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

학 생 인적사항	학 과		학 번	
	성 명		학년(학기)	
수강과목	과목명			
	개설학기		분반여부	
	이수구분		강의시간	

위와 같이 교수-자녀, 배우자, 4촌이내 인척 간 강의수강 내역을 사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교학처장(대학원장) 귀하

[별표 2]

교수-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간 성적평가 공정성 확인

학 생 인적사항	학 과		학 번	
	성 명		학 년(학기)	
수강과목	과 목 명			
	개설학기		분반여부	
	이수구분		강의시간	
성적평가 공정성 확 인 (확인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	확인 내용			확인 결과
	1.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출석 여부			
	2.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절한 점수의 부여 여부			
	3.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4. 시험 답안지 채점의 공정성 여부(타 학생답안지와 비교)			
	5. 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			
위와 같이 교수-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간 성적평가 공정성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교학처장(대학원장) 귀하				